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5. 27 선고 2020가단2864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법무법인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1. 5. 13.

판결 선고 2021. 5. 2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8. 7. 1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. 7. 11. 접수 제27872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송인권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금 37,041,371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. 6. 29.부터의 지연이자 채권을 가진 자이고, 피고는 위 D의 가족으로 추정(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가 된 위 D과 피고의 주소가 동일하고 피고의 성이 위 D과 같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피고는 위 D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.)되는 자로서, 위 D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8. 7. 10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입니다.

2. 이 사건의 경위

가. 피보전채권의 발생

원고는 2018. 4. 16. 소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원인으로 위 D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며, 위 신청은 2018. 4. 18. 인용(갑 제1호증,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되어 위 D은 같은 달 23. 위 결정문을 송달(갑 제2호증, 나의사건검색)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나. 원고의 소제기

위와 같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이 위 D에게 송달되었지만 위 D이 위 채권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자, 원고는 위 D을 상대로 2019. 5. 22.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위 청구소송은 원고의 승소(갑 제3호증, 판결문)로 2019. 12. 17. 확정(갑 제4호증, 송달확정증명원)되었습니다.

다. D의 증여

한편 원고가 위 D을 상대로 신청했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2018. 4. 23. 송달받았던 위 D은, 같은 해 7. 11. 자신 소유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(갑 제5호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)를 한 사실이 있고,

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, 위 D과 피고의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.

3. 채권자 취소권

가. 증여 시점

위 D이 E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금 401,080, 000원(갑 제6호증, 판결문)임은 대법원의 판결로 2018. 4. 2. 확정(갑 제7호증, 확정증명원)된 사실이 있고,

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D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, 위 신청은 2018. 4. 18. 인용(갑 제1호증,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되어 위 D은 같은 달 23. 위 결정문을 송달(갑 제2호증, 나의사건검색)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,

결국, 위 D은 위 E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되어 자신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결정문의 송달로 확인한 다음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8. 7. 11.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어서, 위 D의 증여 시점만을 보더라도 위 D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나. D의 무자력

아울러 위 D이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D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(갑 제8호증, 나의사건검색)을 하게 되었고, 위 D은 2020. 9. 21. 자신의 재산목록(갑 제9호증, 재산목록)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(위 D은 재산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과거 처분한 재산으로 기재했다가 삭제했으며, 원고는 위 삭제된 부분을 보고서야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),

위 D은 위 재산목록에 현재의 재산 및 과거(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2020. 4. 14. 부터 2년 전까지)에 처분한 재산이 없다고 기재했던 사실이 있고, 위 D이 과거에 처분한 재산까지 없는 것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, 위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2018. 7. 11. 당시에는 위 D의 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다. 피고의 악의

나아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, 피고가 위 D의 가족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설령 피고가 위 D의 가족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라. 소결

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점,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D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여 위 D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,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자인 피고가 위 D과 성과 주소 등이 같아 가족으로 보여져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충분히 추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, 피고와 위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.

4. 향후 입증방법

위 D이 E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은 대법원의 판결로 2018. 4. 2. 확정(갑 제7호증, 확정증명원)된 바 있고,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D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(갑 제1호증,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을 받았으나, 위 D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위 D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추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위 D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지연시켰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,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와는 관련 없는 주장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므로,

만약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을 또다시 부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위 D의 자력 등을 아무런 근거조차 없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면, 원고는 피고와 위 D을 수사기관에 강제집행 면탈 및 민사집행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이들의 행위가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.

5. 결

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와 위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,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.

별지

1. 1동 건물의 표시

서울 특별시 마포구 F에 있는 G동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
[도로명 주소] 서울 특별시 마포구 H

1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서울 특별시 마포구 F 대 3751m²

1.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 I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33.48m² 지하실 J호 11.16m²

1. 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 : 3751분의 26.06

: 3751분의 8.68. 끝.